

[] 국내 [] 정기편 노선 [] 허가 신청서
[] 국제 [] 부정기편 운항 (신고서)
[] 소형

※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부정기편 운항의 경우에는 신고서이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정기편 노선허가 15일 부정기편 노선허가 5일 (군공항은 10일)
------	------	------	--
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		전화번호
			팩스번호

신청내용	개설노선명 또는 항행의 경로
	운항개시예정일

「항공사업법」 제7조제2항·제3항,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, 제14조제1항에 따라

[] 정기편 노선 [] 을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합니다.
[] 부정기편 운항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지방항공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 신청이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(정기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(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3항제3호가목·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합니다)	수수료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1조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허가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

- 허가를 받으신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허가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.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(국제선 허가 신청 시, 전화번호 : 044-201-4212), 항공산업과(국내선 허가 신청 시, 전화번호 044-201-42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